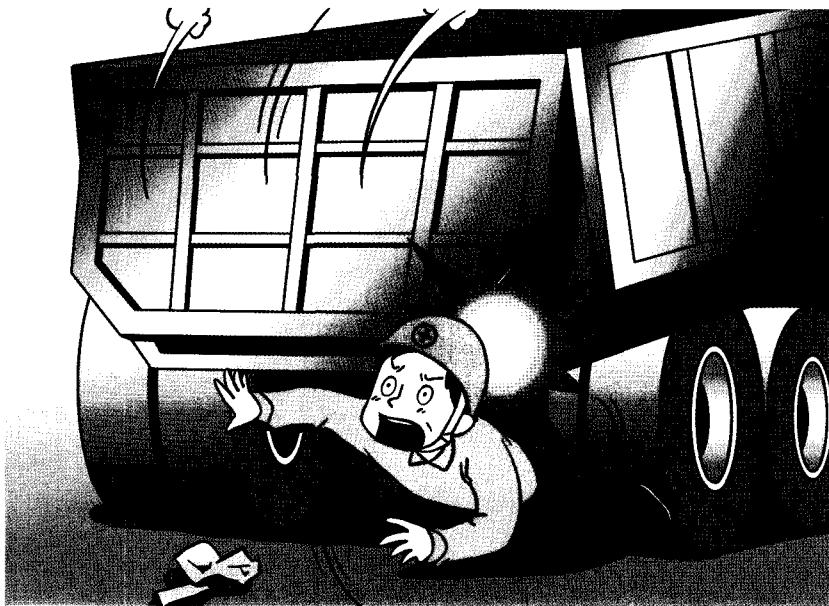


하역작업 중 적재함에 협착



업종 : 위생 및 유사서비스

생산품 : 산업폐기물을 처리

기인물 : 차량 적재함

재해유형 : 협착

피해정도 : 사망 1명



1. 재해개요

신소각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차량 운전 기사가 ARM ROOL 차량을 입고한 적재함을 상승시켜(적재함이 기울어짐) 폐기물을 하역 후 차량에 내려서 적재함을 확인하고자 상승시킨 적재함으로 접근. 차량의 폐기물이 적재함 문짝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손으로 제거하던 중 적재함이 중력에 의해 피재자 쪽으로 내려와 피재자는 바닥과 적재함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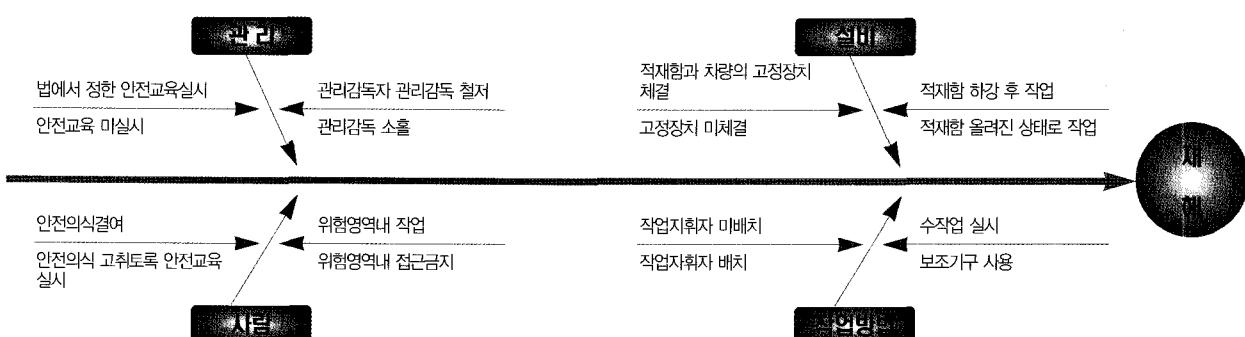
- (1) 적재함이 올려진 상태에서 위험영역내 작업
- (2) 적재함과 차량의 고정장치 미체결
- (3)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 실시
- (4) 작업지휘자 미배치 및 관리감독 소홀
- (5) 안전교육 미실시

3. 예방대책

- (1) 적재함이 올려진 상태에서 차량 뒤쪽 접근금지
- (2) 적재함과 차량의 고정장치 체결
- (3) 차량폐기물 제거시 보조기구 활용
- (4) 작업지휘자 배치
- (5) 안전교육 실시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장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천장 전기배선 작업중 감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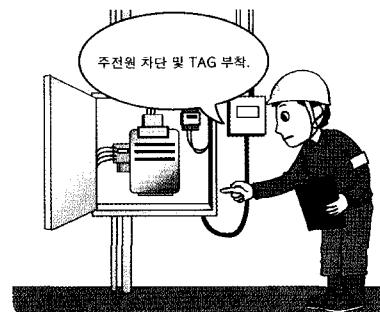
업종 : 의료서비스업

생산품 : 의료서비스

기인물 : 1차측 전원

재해유형 : 감전

피해정도 : 사망 1명



1. 재해개요

병원 내 지하 1층 개축된 물리치료실에서 피재자가 벽면 콘센트에 전원선을 연결하기 위해 이동식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 텍스를 끌어내고 천정 상부에서 전기선 연결작업을 실시하던 중 1차측 상시전원선에 접촉하여 감전되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.

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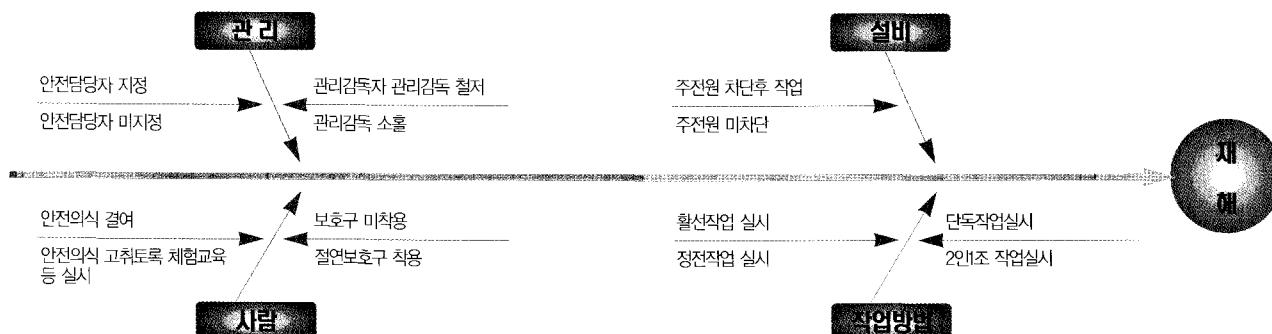
- (1) 지상1층 분전반에 주전원 미차단
- (2) 활선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
- (3) 단독작업 실시
- (4) 안전담당자 미지정
- (5) 작업계획서 미작성
- (6) 관리감독 소홀

3.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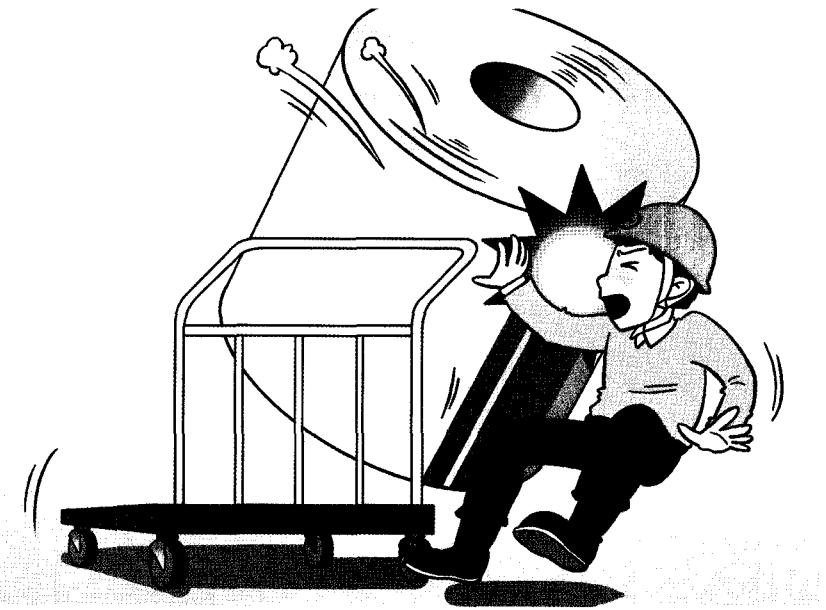
- (1) 주전원 차단 및 해당 전로 정전시킨 후 작업
- (2) 절연용 보호구 착용 후 작업
- (3) 2인 1조 작업 실시
- (4)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
- (5)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의한 작업실시
- (6) 관리감독 철저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운반중인 롤 전도로 협착



업종 : 고무제품제조

생산품 : 고무벨트

기인물 : 고무시트롤

재해유형 : 전도, 협착

피해정도 : 사망 1명



1. 재해개요

압연된 반제품 고무시트롤(원통형, 폭90cm, 직경:180cm, 무게:2톤)을 면적 105cm×174cm의 대차에 싣고(상판의 밖으로 고무시트롤이 36cm정도 나와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상태) 운반 후 성형기의 권출기에 설치하던 중 고무시트롤이 피재자 쪽으로 전도되며 고무시트롤과 바닥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.

2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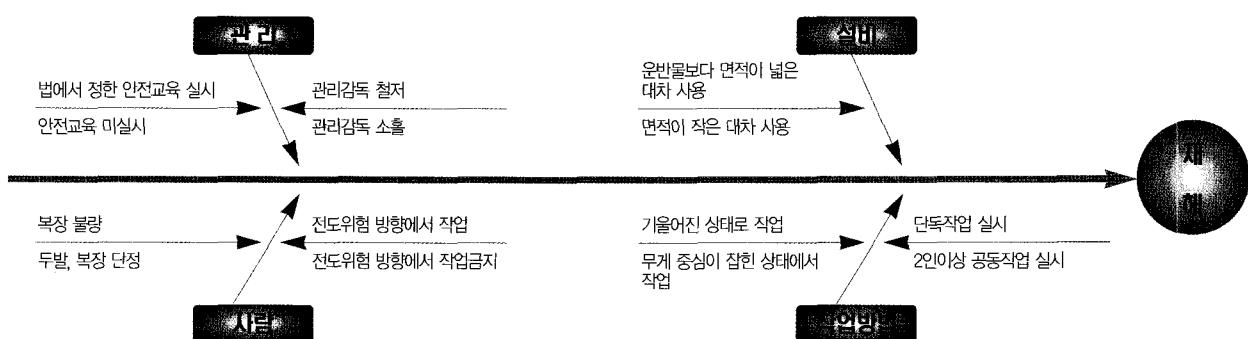
- (1) 운반물 보다 면적이 작은 대차 사용
- (2) 무게중심이 기울어진 상태로 중량물 취급작업 실시
- (3) 단독작업 실시
- (4) 전도 위험방향에서 작업실시
- (5) 관리감독 소홀
- (6) 안전교육 미실시

3.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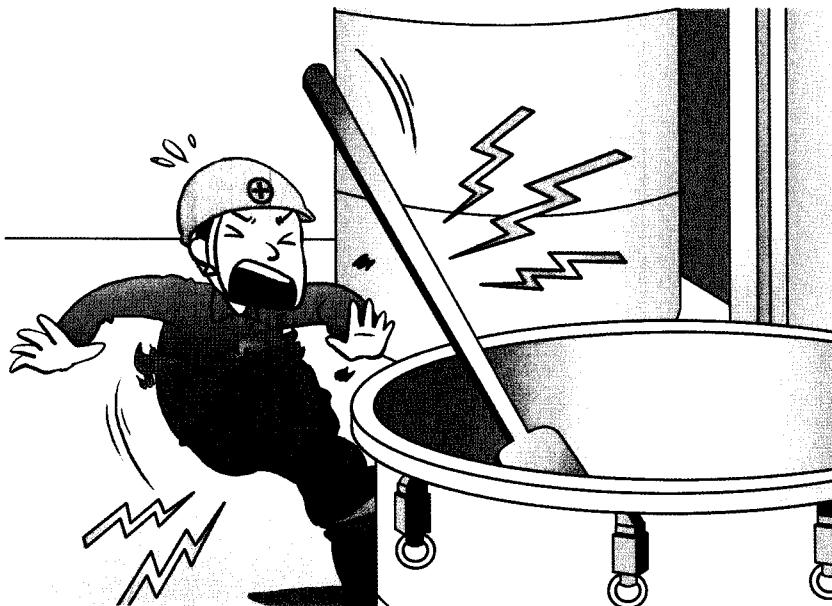
- (1) 운반물 보다 면적이 넓은 대차 사용
- (2) 무게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작업 실시
- (3) 2인 이상 공동작업 실시
- (4) 전도 위험방향에서 작업 금지
- (5) 관리감독 철저
- (6)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정전기로 인한 화재



업종 : 의약품 제조
생산품 : 항생제
기인물 : 화염
재해유형 : 화상
피해정도 : 사망 1명, 500만원



1. 재해개요

항생제 원료인 중간체를 사고 전날(금요일) 합성작업(이소프로필 알콜 사용) 후 누체필터에서 질소건조를 완료함. 건조된 항생제 분말을 용기에 담하 출하시기 위해 도전성 재질의 스테인레스 고무래(수공구)를 이용하여 수거하던 중 전날부터 축적된 정전기가 방전되어 스파크가 발생. 발생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재자의 작업복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 후송,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원인

- (1) 휴일 근무로 작업 전 준비점검 미실시
- (2) 누체필터 접지 미실시
- (3) 최초 작업전 환기 미실시
- (4) 휴일 근무시 관리감독 미실시
- (5) 안전교육 미실시

3. 예방대책

- (1) 작업 전 준비점검 철저 이행
- (2) 접지 실시
- (3) 작업전 환기 실시
- (4) 휴일 근무시 별도 관리감독 실시
- (5)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

4. 법 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)
나.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.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